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(박혜련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80

발의연월일 : 2015. 6. 19.

발 의 자 : 박혜련 · 김경훈 · 김동섭
전문학 · 박병철 · 송대윤
박상숙의원(7명)

1. 주 문

○ 대전광역시의회 “예산결산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한다.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, 기금운용계획안,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, 그리고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,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함.

3. 관련법규

○ 지방자치법 제66조

○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

○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

【참고자료】

지 방 자 치 법

제66조 (의안의 발의)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②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
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의회는 예산안.결산.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상임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.

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제68조(예산안 심의)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“예결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

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72조(결산의 심사)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.
③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 제3항을 준용한다.

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】

찬 성 의 원 명 단

찬성의원	서　명	비 고
박 혜 련		
김 정 훈		
김 동 식		
김 문 학		
박 정 희		
송 대 원		
박 상 욱		